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 박성중·윤희숙·홍문표

이명수 · 백종헌 · 박 진

홍준표・송석준・유경준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

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9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제9조제5항 전단 중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

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과</u>
	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
	<u>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u>우를 말한다.</u>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제7조(납세의무자) ①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u>6억원</u> 을 초과하	<u>9억원</u>
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u>(</u> 1세대 1주택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제 (생 략)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u>서 9억원</u>
②
1. • 2. (현행과 같음)
3.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③·④ (현행과 같음)
[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제6항	

⑥ (현행과 같음)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의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u>공제율</u>
<u>5년 이상 10년 미만</u>	<u>100분의 20</u>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u>15년 이상</u>	<u>100분의 50</u>